

第304回國會
(臨時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1年12月26日(月)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6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1.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김정권·주광덕·신상진·손범규·임 해규·황우여·권경석·김소남·이두아·이종혁 의원 발의)(계속)	7
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 · 강성천 · 김세연 · 박대해 · 송영선 · 이화수 · 정갑윤 · 조원진 · 허천 · 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7
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 · 김정권 · 임두성 · 송영선 · 이한성 · 이종혁 · 유성엽 · 허원제 · 이인기 · 한선교 · 박상돈 · 황우여 · 신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5386)(계속) 7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 · 김정권 · 신학용 · 이인기 · 임두성 · 송영선 · 이한성 · 김성태 · 손범규 · 한선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6077)(계속) 7
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 · 김정권 · 유성엽 · 이한성 · 이종혁 · 이해봉 · 김성태 · 임두성 · 김효재 · 김우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7092)(계속) 7
1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6385)(계속) 7
1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855)(계속) 7
1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1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 · 진수희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헌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7
1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 · 강성천 · 박종근 · 박준선 · 유정현 · 이두아 · 이명규 · 이사철 · 이화수 · 정병국 · 조문환 · 허태열 의원 발의)(계속) 7
1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 · 원희룡 · 박준선 · 이한성 · 김세연 · 정갑윤 · 현기환 · 전현희 · 유재중 · 박대해 의원 발의)(계속) 7
1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7094)(계속) 7
1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918)(계속) 7
1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1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2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을동 · 김창수 · 권선택 · 류근찬 · 이재선 · 김용구 · 심대평 · 임영호 · 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7
2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진수희 · 정진석 · 김용태 · 박준선 · 손범규 · 원희목 · 이범래 · 정진섭 · 조진래 · 주광덕 · 김종률 · 안민석 · 오제세 · 이성남 · 전병헌 · 이명수 · 김을동 · 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7
22.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을동 · 김창수 · 권선택 · 류근찬 · 이재선 · 김용구 · 심대평 · 임영호 · 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7
23.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범관 의원 대표발의)(이범관 · 윤석용 · 황진하 · 신성범 · 손범규 · 박민식 · 김용구 · 김무성 · 권택기 · 강성천 · 정영희 · 이진복 · 변웅전 · 홍희덕 · 조해진 의원 발의)(계속) 7
2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2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2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2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창수 · 임영호 · 김용구 · 김정권 · 이상민 · 권선택 · 정의화 · 이용희 · 김을동 의원 발의)(계속) 7
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2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3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31.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 · 신영수 · 이미경 · 강성천 · 이사철 · 김금래 · 홍영표 · 조원진 · 정진섭 · 김영우 의원 발의) 7
3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 · 손범규 · 원희룡 · 정진섭 · 정병국 · 이범관 · 강성천 · 김성순 · 김용구 · 박대해 의원 발의)(계속) 7
3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 · 백재현 · 정범구 · 추미애 · 최영

회 · 김진애 · 장병완 · 김충조 · 홍영표 · 김상희 · 김성곤 · 오제세 · 김영록 · 최재성 · 송민순 · 이찬열 · 박지원 · 박우순 · 노영민 · 안규백 · 강창일 · 이용섭 · 박은수 의원 발의)(계속)	8
3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35.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을동 · 김창수 · 권선택 · 류근찬 · 이재선 · 김용구 · 심대평 · 임영호 · 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8
3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
3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3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윤선 의원 대표발의)(조윤선 · 유성엽 · 임동규 · 이성현 · 주호영 · 이인기 · 이한성 · 배은희 · 황우여 · 안효대 · 조원진 · 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8
3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 · 김옥이 · 박준선 · 손범규 · 신영수 · 원희룡 · 이범관 · 이은재 · 이정선 · 임동규 · 정미경 의원 발의)(계속)	8
4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489)(계속)	8
4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이찬열 · 이미경 · 신낙균 · 홍희덕 · 이낙연 · 정동영 · 정범구 · 김영진 · 신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05)(계속)	8
4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이찬열 · 이미경 · 신낙균 · 홍희덕 · 이낙연 · 정동영 · 정범구 · 김영진 · 신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19)(계속)	8
4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유선호 · 유성엽 · 조영택 · 오제세 · 조배숙 · 김재균 · 조정식 · 박은수 · 장세환 의원 발의)(계속)	8
4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400)(계속)	8
4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4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 · 주호영 · 정양석 · 김학송 · 안효대 · 김옥이 · 윤석용 · 김영우 · 전현희 · 김을동 · 강승규 의원 발의)(계속)	8
4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 · 최규성 · 강창일 · 주승용 · 김재균 · 이춘석 · 유선호 · 김창수 · 문학진 · 박우순 · 이찬열 · 전병헌 · 조경태 · 김진표 · 홍재형 · 김영환 의원 발의)(계속)	8
4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
4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5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 · 김금래 · 김세연 · 김학송 · 김호연 · 손범규 · 송영선 · 윤석용 · 이화수 · 정해걸 · 조원진 의원 발의)(계속)	8
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구 의원 대표발의)(김용구 · 이명수 · 오제세 · 임영호 · 김낙성 · 김창수 · 변웅진 · 李玲愛 · 주승용 · 신낙균 · 조배숙 · 김성곤 · 강성천 · 안규백 · 신영수 · 이재선 · 권선택 · 유정현 · 류근찬 · 김재균 · 이낙연 · 박선영 · 정진섭 · 홍희덕 · 손범규 · 정병국 · 홍영표 · 이미경 의원 발의)(계속)	8
5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강석호 · 강성천 · 김성식 · 김성태 · 김재경 · 손범규 · 유기준 · 유일호 · 이명규 · 이범관 · 이범래 · 이성현 · 이화수 · 정갑윤 · 정진섭 · 정태근 · 최구식 · 허원제 · 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14
5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강석호 · 강성천 · 김성식 · 김성태 · 김재경 · 손범규 · 유일호 · 이명규 · 이범관 · 이범래 · 이성현 · 이화수 · 정갑윤 · 정진섭 · 정태근 · 최구식 · 허원제 · 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14
5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강석호 · 강성천 · 김성식 · 김성태 · 김재경 · 손범규 · 유일호 · 이명규 · 이범관 · 이범래 · 이성현 · 이화수 · 정갑윤 · 정진섭 · 정태근 · 최구식 · 허원제 · 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15
5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발의)(김상희 의원	

외 82인 발의)(계속) 15

5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5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강석호 · 강성천 · 김성식 · 김성태 · 김재경 · 손범규 · 유기준 · 유일호 · 이명규 · 이범관 · 이범래 · 이성현 · 이화수 · 정갑윤 · 정진섭 · 정태근 · 최구식 · 허원제 · 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15

5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강석호 · 강성천 · 김성식 · 김성태 · 김재경 · 손범규 · 유기준 · 유일호 · 이명규 · 이범관 · 이범래 · 이성현 · 이화수 · 정갑윤 · 정진섭 · 정태근 · 최구식 · 허원제 · 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15

6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

6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 · 이춘식 · 윤진식 · 김형오 · 주광덕 · 유정현 · 임해규 · 강성천 · 이은재 · 김호연 의원 발의)(계속) 15

6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 · 이정선 · 유정현 · 박준선 · 김옥이 · 김용구 · 정미경 · 김소남 · 손범규 · 신영수 의원 발의)(계속) 15

6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

6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 · 신성범 · 정갑윤 · 박상돈 · 김창수 · 심대평 · 안형환 · 조문환 · 박희태 · 양승조 · 원희룡 의원 발의)(계속) 15

6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 · 강창일 · 박영선 · 이명수 · 원혜영 · 신낙균 · 유선호 · 강봉균 · 이화수 · 정동영 · 서종표 · 문희상 · 최종원 · 박은수 의원 발의)(계속) 15

6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

6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정장선 · 김진애 · 최문순 · 이강래 · 김춘진 · 우제창 · 조정식 · 이낙연 · 김동철 · 김재균 · 양승조 · 안규백 · 이찬열 · 김상희 · 전혜숙 · 신학용 · 이성남 · 박선숙 · 최영희 · 최규성 · 백재현 · 박은수 · 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15

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5

(10시22분 개의)

○위원장 김성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윤광식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순 방금 입법조사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 5일자로 민주당 신낙균 위원이 사임하시고 정동영 위원이 보임해 오셨습니다.

1.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3분)

○위원장 김성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국정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이 보고서(안)은 감사 실시 일반 사항, 주요 감사 실시 내용,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 결과 및 처리 내용은 각 국감 대상기관별로 시정 요구 사항 및 처리 요구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 사항의 소관 부처별 건수는 환경부 250건, 고용노동부 159건, 기상청 42건 등 총 451건이며, 이러한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하

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서(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 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우리 위원회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영표 위원 제가 의견을 줌……

○위원장 김성순 예, 홍영표 위원, 의견……

○홍영표 위원 민주통합당 홍영표 위원입니다.

○이범관 위원 ‘통합’ 자가 들어가는구나.

○홍영표 위원 예, 이름 바꿨습니다.

○이범관 위원 정식으로 등록했어요?

○홍영표 위원 예, 민주통합당입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서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저희가 시간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제대로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없었던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2개는 감사원 감사 청구 그리고 3개는 환경부 감사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간사 협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측의 이범관 간사께서는 감사 청구 요청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사실 오늘 통과시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선 강원도 골프장 관련 그리고 반환 미군기지 관련은 우리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야당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4대강 습지 훼손 및 훼손 면적 축소, 매립지 악취 대책, 낙동강 15공구 불법 매립 폐기물, 이것은 적어도 환경부에서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나머지 말씀드린 세 가지는 환경부에서 감사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적어도 강원도 골프장과 반환 미군기지 관련해서는 꼭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협의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은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성순 정진섭 위원님!

○정진섭 위원 민주통합당의 홍영표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간사 간에 협의를 계속 좀 해 나가시면서 오늘 처리해야 될 의결 사항들은 빨리 처리하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순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홍영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그냥 의견 첨부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요. 국감 결과보고서는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손범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성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범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손범규 위원 지금 밖에 용담댐, 전주지방환경청 관할의 용담댐 상류 폐기물 매립장 문제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또 와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간사 협의하실 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에 지금 정부기관이라든지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민주통합당의 관할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이 지금 없는데, 지역구의 수많은 분들이 계속 이렇게 오고 계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청구 여부를 논의하실 때 여야 간사 간에 의제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손범규 위원이 지금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그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간사 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2011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문안 그리고 차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51개 안건을 모두 일괄해서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김정권·주광덕·신상진·손범규·임해규·황우여·권경석·김소남·이두아·이종혁 의원 발의)(계속)
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강성천·김세연·박대해·송영선·이화수·정갑윤·조원진·허천·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김정권·임두성·송영선·이한성·이종혁·유성엽·허원제·이인기·한선교·박상돈·황우여·신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5386)(계속)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김정권·신학용·이인기·임두성·송영선·이한성·김성태·손범규·한선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6077)(계속)
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김정권·유성엽·이한성·이종혁·이해봉·김성태·임두성·김효재·김우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7092)(계속)
1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6385)(계속)
1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855)(계속)
1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1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강성천·박종근·박준선·유정현·이두아·이명규·이사철·이화수·정병국·조문환·허태열 의원 발의)(계속)
1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원희룡·박준선·이한성·김세연·정갑윤·현기환·전현희·유재중·박대해 의원 발의)(계속)
1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7094)(계속)
1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918)(계속)
1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2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22.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23.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법관 의원 대표발의)(이법관·윤석용·황진하·신성범·손범규·박민식·김용구·김무성·권택기·강성천·정영희·이진복·변용전·홍희덕·조해진 의원 발의)(계속)
2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창수·임영호·김용구·김정권·이상민·권선택·정의화·이용희·김을동 의원 발의)(계속)
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1.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신영수·이미경·강성천·이사철·김금래·홍영표·조원진·정진섭·김영우 의원 발의)
3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손범규·원희룡·정진섭·정병국·이법관·강성천·김성순·김용구·박대해 의원 발의)(계속)

- 3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백재현·정범구·추미애·최영희·김진애·장병완·김충조·홍영표·김상희·김성곤·오제세·김영록·최재성·송민순·이찬열·박지원·박우순·노영민·안규백·강창일·이용섭·박은수 의원 발의)(계속)
- 3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계속)
- 3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윤선 의원 대표발의)(조윤선·유성엽·임동규·이성현·주호영·이인기·이한성·배은희·황우여·안효대·조원진·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 3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김옥이·박준선·손범규·신영수·원희룡·이범관·이은재·이정선·임동규·정미경 의원 발의)(계속)
- 4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489)(계속)
- 4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찬열·이미경·신낙균·홍희덕·이낙연·정동영·정범구·김영진·신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05)(계속)
- 4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찬열·이미경·신낙균·홍희덕·이낙연·정동영·정범구·김영진·신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19)(계속)
- 4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유선호·유성엽·조영택·오제세·조배숙·김재균·조정식·박은수·장세환 의원 발의)(계속)
- 4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400)(계속)
- 4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주호영·정양석·김학송·안효대·김옥이·윤석용·김영우·전현희·김을동·강승규 의원 발의)(계속)
- 4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최규성·강창일·주승용·김재균·이춘석·유선호·김창수·문학

진·박우순·이찬열·전병헌·조경태·김진표·홍재형·김영환 의원 발의)(계속)

- 4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김금래·김세연·김학송·김호연·손범규·송영선·윤석용·이화수·정해걸·조원진 의원 발의)(계속)
- 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구 의원 대표발의)(김용구·이명수·오제세·임영호·김낙성·김창수·변용진·李玲愛·주승용·신낙균·조배숙·김성곤·강성천·안규백·신영수·이재선·권선택·유정현·류근찬·김재균·이낙연·박선영·정진섭·홍희덕·손범규·정병국·홍영표·이미경 의원 발의)(계속)

(10시31분)

○위원장 김성순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하였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박준선 의원·이성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하였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정진석 의원·조원진 의원·박민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하였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정부가 제출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진수희 의원·이명수 의원·이범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정부가 제출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

의하고 정부가 제출하였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정부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부터 34항까지 이정선 의원·이미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7항까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하였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5항까지 조운선 의원·강성천 의원·홍영표 의원·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하였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9항까지 조해진 의원·노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하였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박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김용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이법관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법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법관 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과 23일 환경부차관 등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42건의 안건을 심사 완료하였고 기타 법률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정의하고 각 부처의 소관별 전략을 총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며 생물자원의 국외 반출 승인제도에 해양생물이 포함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긴급조치의 시행 주체를 환경

부장관 등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서도 환경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박준선 의원, 이성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내용은 화학물질 확인 범위를 축소하고 취급제한·금지 물질 지정 전에 대상물질의 명칭과 시행시기 등 사전 예고, 유해화학물질로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 중지, 사고대비물질의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 조원진 의원, 박민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수출입 또는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 대상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외,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의 대상 범위 확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 결과의 전자문서 보존 근거 마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기기 등의 수출입 제한 등입니다.

또 정부가 제출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토양환경평가기관과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현행과 같이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계속 두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순서를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진수희 의원, 이명수 의원, 이법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내용은 샘플보전구역 지정 근거 마련, 샘플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규정, 샘플보전구역 지정 시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 지원, 양벌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대로 10년으로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등의 사유와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내용은 전량 수출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면제하고,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신개발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처 간의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공단의 설립목적과 사업 범위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정선 의원, 이미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하여 기본이념에 형평성 개념을 추가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의 15%를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계속 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데 그 내용은 권한의 주체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 등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윤선 의원, 강성천 의원, 홍영표 의원, 강창

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 개선,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 억제 시책 구체화,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관리 및 처리방안 마련, 냉매가스의 관리 및 처리 의무 규정,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의원, 조해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고, 대안의 내용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신설하며 환경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금의 상한액을 폐지하며 자연환경조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과 같이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두고, 시설의 보완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박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저수지의 소유권 및 관리 권한의 양도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용기 중 일정비율 이상에 대해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면서 그 문구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기로 했는데 그 정리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2조제2항제2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

조한 제품·재료·용기” 이렇게 규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법관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 생략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2항까지 50건은 모두 일부개정법률안들이고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축조심사 형태로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이를 생략하되, 의사일정 제2항은 제정 법안이므로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2항까지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각 법률안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 법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이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6조부터 34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제35조부터 제38조 그리고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의사일정 제5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박준선 의원, 이성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의사일정 제12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정진석 의원, 조원진 의원, 박민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의사일정 제18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부가 제출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진수희 의원, 이명수 의원, 이범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은 각각 본회의에 얹기로 하고 그 대신 의사일정 제24항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정부가 제출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의사일정 제29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정부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및 33항 이정선 의원, 이미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의사일정 제34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의사일정 제37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4항까지 조운선 의원, 강성천 의원, 홍영표 의원, 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의사일정 제45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8항까지 조해진 의원, 노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의사일정 제49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박준선 의원이 대표발

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김용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김용구 위원님, 괜찮습니까? 아까…… 됐어요?

○**金容九 委員** 아까 소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할 적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위원장 김성순** 있지요.

○**金容九 委員** 그 내용대로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그러면 이의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법률안들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방금 의결한 법률안 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존경하는 김성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말을 맞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19개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확보, 생물자원의 이익과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건법 개정을 통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확대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을 신속히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을 통해 배출

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오염 토양의 반출·정화 절차를 개선하였고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침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기술 환경측정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녹색매장 지정을 확대하여 녹색제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해 악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분류 체계를 개선하고 비산 배출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굴뚝자동측정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국가의 측정기기 부착·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업 등록제와 생태관광지역 인증제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자연 복원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먹는물관리법 등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어 그동안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들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환경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장·차관 그리고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요.

○**홍영표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질의할 게 있어서요.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장관님, 22일 날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리산 네 구간, 설악산 양양, 월출산 영암, 한려해상 사천 구간의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논의를 했습니다.

○**홍영표 위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셨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2010년 9

월 20일 날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케이블카 설치 규정을 완화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케이블카는 사실 자연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해야 된다는 목적하고 또 지역 개발이라는 경제 논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런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자원을 오히려 보호하는 그런 쪽에 가치를 두고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진입로 공사나 정거장 공사, 철탑 공사, 아무튼 자연환경과 경관이 대단히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 케언즈의 쿠란다 국립공원을 보면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해서 케이블카를 건설했고, 이 방식이 좋기는 한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도 어렵고요. 그래서 할 수 없으면 친환경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은 또 비용 측면에서 보면 아마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국립공원 내의 대형 케이블카 추진이 우선 시범사업보다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케이블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악산도 있고 내장산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국립공원들에 대한 환경평가를 먼저 해서 또 경제적 타당성 문제도 분석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도 있고요, 또 환경파괴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평가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케이블카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에 대규모 케이블카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정부의 환경 생태계를 무시하는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이런 대규모 케이블카 건설은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유영숙** 우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 22일 공원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한 것은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확정했습니다. 그래

서 당장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케이블카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2km 정도의 작은 건데 기존에 있는 케이블카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것은 민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정책을 하는 KEI도 포함을 해서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서 아마 내년 중에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성에 굉장히 중점을 두어서 역시 기술성, 경제성 4개 분야를 모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기준에 충족을 할 경우에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또 그 과정에 일부 환경단체들의 이견이 있으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기존 시설에 대해 환경성평가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부 장·차관 비롯해서 직원들 지금 퇴장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지 않고 곧바로 고용노동부 소관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속히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17건의 안건을 모두 일괄해서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5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김성태·김재경·손범규·유기준·유일호·이명규·이법관·이법래·이성현·이화수·정갑윤·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5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

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김성태·김재경·손범규·유일호·이명규·이법관·이법래·이성현·이화수·정갑윤·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5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김성태·김재경·손범규·유일호·이명규·이범관·이범래·이성현·이화수·정갑윤·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5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발의)(김상희 의원 외 82인 발의)(계속)
5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김성태·김재경·손범규·유기준·유일호·이명규·이범관·이범래·이성현·이화수·정갑윤·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5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김성태·김재경·손범규·유기준·유일호·이명규·이범관·이범래·이성현·이화수·정갑윤·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6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이춘식·윤진식·김형오·주광덕·유정현·임해규·강성천·이은재·김호연 의원 발의)(계속)
6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이정선·유정현·박준선·김옥이·김용구·정미경·김소남·손범규·신영수 의원 발의)(계속)
6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신성범·정갑윤·박상돈·김창수·심대평·안형환·조문환·박희태·양승조·원희룡 의원 발의)(계속)
6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강창일·박영선·이명수·원혜영·신낙균·유선호·강봉균·이화수·

정동영·서종표·문희상·최종원·박은수 의원 발의)(계속)

6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정장선·김진애·최문순·이강래·김춘진·우제창·조정식·이낙연·김동철·김재균·양승조·안규백·이찬열·김상희·전혜숙·신학용·이성남·박선숙·최영희·최규성·백재현·박은수·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1시05분)

○위원장 김성순 의사일정 제53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57항까지 이주영 의원,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정부가 제출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강성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68항까지 여상규 의원, 최규식 의원, 홍영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하였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이범관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범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이범관 위

원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원금의 환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주영 의원,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차별시정의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지도 및 이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파견근로의 확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용형 파견근로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일원화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대상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강성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주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 제한기간을 출국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재입국 취업 허용사업 또는 사업장의 결정 주체를 외국인력정책 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당연 지정취소 사유의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에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고 일부의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홍영표 의원, 여상규 의원, 최규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 3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 파견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9건의 개정안 중 여야 합의를 통해 반영이 가능한 내용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정보 제공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불임금 연대책임의 범위를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연차휴가 사용의 확대를 위해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시행시점을 현행 휴가청구권 소멸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기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법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법안심사소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범관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 열심히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 생략의 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69항까지 17건은 모두 일부개정법률안들이고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축조심사 형태로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69항까지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각 법률안에 대해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 이주영 의원,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의사일정 제57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정부가 제출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강성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67항까지 여상규 의원, 최규식 의원, 홍영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의사일정 제68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영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민주통합당 홍영표 위원입니다.

저희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심사 과정에서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조항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의5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와 합의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지금 파견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는 대개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관계로 봐서 약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주와 합의를 하도록 한다면 사실상은 비정규직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이라는,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와 합의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조항의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법을 저희가 개정하는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법관 위원님!

○**이법관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참고로 정부 측에서 의견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단서조항은 사족이기 때문에 없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성순**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홍영표 위원님이 지금 발언하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양당 간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법률안들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들과 관련해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되는 법률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즉시 고용의무가 부과되며 또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수습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파견근로자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현행 실업자 위주에서 기간제·시간제·파견근로자 등 취업 중인 근로자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금융신용제재, 그리고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각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근로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고용노동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년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가 모범 상임위원회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감
 사합니다.

특히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비롯해서 120
 여 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상정·심사하는 그
 런 성과만이 아니고 한진중공업을 비롯해서 어려
 운 사회적 문제,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적극 협
 력을 해서 해결을 했고 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잠깐만요.

국정감사보고서 채택 안 해요?

○입법조사관 윤광식 처음에 했습니다.

○이미경 위원 했다고?

벌써 했어요?

○손범규 위원 했잖아요.

맨 처음에 그것부터 했는데?

○입법조사관 윤광식 제일 처음에 1항으로 했습
 니다.

○이미경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강 성 천 김 성 순 김 용 구 손 범 규
 이 미 경 이 범 관 이 정 선 정 진 섭
 조 해 진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천 병 호
 전 문 위 원 원 창 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관 유 영 숙
 차 관 윤 중 수
 기 획 조 정 실 장 정 연 만
 녹 색 환 경 정 책 관 이 찬 희
 환 경 보 건 정 책 관 이 필 재
 기 후 대 기 정 책 관 이 재 현
 물 환 경 정 책 국 장 이 정 섭

상하수도정책관 오 종 극
 자연보전국장 백 규 석
 고용노동부
 장 관 이 채 필
 차 관 이 기 권
 기획조정실장 전 운 배
 고용정책실장 이 재 갑
 노동정책실장 조 재 정
 인력수급정책관 한 창 훈
 직업능력정책관 하 미 용
 고용평등정책관 권 영 순
 고용서비스정책관 나 영 돈
 근로개선정책관 박 종 길
 정책기획관 신 기 창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신낙균	정동영	민주당	2011. 12. 5